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및 정부정책방향

편집실

1. 현황

-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부가세, 특소세 등)을 전액 면제 공급(농업용 1986. 3월, 어업용 1972. 1월부터 시행)
 - 대상기종 : 농용트랙터, 농업용 난방기, 어선 등
 - 2012. 6. 30까지는 유류세 전액 면제, 2012. 12. 31까지는 75% 감면
 - * 면세유 종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 2010년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 : 302만kl (2011년 배정량 333, 10.3% 증)
 - 농업용 : (2008)198만kl ⇒ (2009)190만kl ⇒ (2010)192만kl ⇒ (2011. 배정량)210만kl
 - 어업용 : (2008)99만kl ⇒ (2009)115만kl ⇒ (2010)110만kl ⇒ (2011. 배정량)123만kl
 - 2010년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 : 1조 8,169억원
 - 농업용 : (2008)11,535억 원 ⇒ (2009)11,208억 원 ⇒ (2010)11,353억 원
 - 어업용 : (2008)6,021억 원 ⇒ (2009)7,522억 원 ⇒ (2010)6,816억 원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년도 사용실적, 농기

- 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유종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신청
- 기획재정부는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간공급한도량 배정
 - 3/4분기까지 한도량을 4~6월중에 확정하고 사용추세를 감안하여 4/4분기 한도량을 12월 초순에 확정
- 농·수협은 농·어가별 배정 후 필요시 추가배정 업무 수행
-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내용
 -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전용카드 제도 도입(2004어업용, 2008농업용)
 - 면세유 판매업소 지정제 운영(10,800개) 및 수협 직영주유소(14개) 확대
 - 면세유류 부정유통 관련자 제재 강화(2008)
 - 추정액 확대(감면세액의 10% ⇒ 40%) 및 공급 중단기간 연장(1년 ⇒ 2년)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한정(2011)
 - 일시적 농업종사자를 제외하여 실질적인 농가에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나 미등록농가의 등록기간 확보와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행유예(2011. 6. 30까지)

2. 공급효과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어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여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

* 농가인구 : (1995)4,851천명 ⇒ (2000)4,031 ⇒ (2008)3,187 ⇒ (2009)3,117 ⇒ (2010)3,068(Δ 1.6%)

* 어가인구 : (1995)347천명 ⇒ (2000)251 ⇒ (2008)192 ⇒ (2009)184 ⇒ (2010)171(Δ7.1%)

* 농업생산액 : (1995)26조3천억원 ⇒ (2000)32조 ⇒ (2008)38조5천 ⇒ (2009)41조4천억원(↑ 7.5%)

* 어업생산액 : (1995)3조8천억원 ⇒ (2000)4조1천 ⇒ (2008)6조3천 ⇒ (2009)6조9천억원(↑ 9.5%)

□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농업을 촉진하여 신선채소와 과일류의 연중 공급 기반구축 및 수출농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

* 채소수출실적 : (2005) 231백만\$ ⇒ (2008) 234백만\$ ⇒ (2009) 251백만\$ ⇒ (2010) 302백만\$

* 화훼수출실적 : (2005) 52백만\$ ⇒ (2008) 76백만\$ ⇒ (2009) 77백만\$ ⇒ (2010) 103백만\$

□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 농가당 영농비 경감액 : (1995) 84천원 ⇒ (2008) 952천원 ⇒ (2010) 964천원

* 2010년 조세감면액 : 1조 1,353천억원, 2010년 농가수 : 1,177천호

3. 면세유 지속 필요성

□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동반 상승으로 농어가 유류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면세유 공급 중단 및 감면 축소는 농어가 경영에 악조건을 가중하는 결과 초래

농가당 감면세액이 농업경영비에 미치는 효과

(단위 : 천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업경영비(A)	15,231	15,696	16,189	16,924	17,123
면세액(B)	1,054	1,152	952	937	964
비율(B/A)	6.9	7.3	5.9	5.5	5.6

○ 어업의 경우 한 가구당 사용량은 농업에 비해 10배 규모

*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농가수/가구당 사용량(2010년) : 192만kl/1,177천호/1.6kl

* 어업용 면세유 사용량/어가수/가구당 사용량(2010년) : 110만kl/66천호/16.7kl

□ 면세유류 감면세액 축소 및 중단 시 농수산물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악화로 농어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면세유 감면 폭 조정 시 농·어가 부담액 추정 (2010년도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100% 감면	75% 감면	50% 감면	25% 감면	0%
면세액	18,169	13,627	9,084	4,542	-
농가부담액	-	2,838	5,677	8,515	11,353
어가부담액	-	1,704	3,408	5,112	6,816

○ 특히, 유류비의 의존도가 높은 시설원예·축산농가·어선어업의 경우 농·어업 경영비 상승은 농·수·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상승과 국민가계 부담으로 작용

- 채소, 과일, 화훼류의 품질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약화

* 시설원예 가온면적(15천ha)중 91.3%(13.4천ha)가 유류 가온

- 어업인의 영어비용 증가로 출어포기 등 어가경제 파산 위기

* 어선어업의 경우 어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은 평균 20.3%

어선어업의 어업비용(출어비, 감가상각비, 임금 및 관리비) 구성(2009년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어업 비용 합계	출어비					임금 및 일반관리비			감가 상각비
		소계	어구비	연료비	수리비	기타	소계	임금	일반 관리비	
금액	744,558	352,949	47,952	151,139	41,297	112,561	369,651	263,874	105,777	21,958
비중	100.0	47.4	6.44	20.3	5.5	15.1	49.6	35.4	14.2	2.9

- 면세유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적 기대치 충족 역할
 - 농·어업 경영비 경감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구조가 열악한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

도시근로자 대비 농·어가 소득 비율

(단위 : 천원,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도시근로자소득(A)	11,343	22,771	28,659	39,025	48,092
농가소득(B)	11,026	21,803	23,072	30,503	32,121
비율(B/A)	97.2	95.7	80.5	78.2	66.8
어가소득(C)	10,023	18,780	18,875	28,028	35,696
비율(C/A)	88.4	82.5	65.9	71.8	74.2

4. 정책방향

-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가 실 사용량 전량 공급 추진
 - 농·어가에서 필요한 실 사용량 전량을 공급, 부족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 공급 추진
 - 배정량 부족 농어가가 면세유 추가 신청 시 실 사용량 확인 후 유보량을 활용하여 추가 배정
 - 실 사용량 시스템 구축으로 제도의 투명성

과 신뢰성 확보

- 유류 사용이 많은 기종에 대해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확대
 - * (현재) 농업용 난방기 등 4개 기종 ⇨ (2011.7.1 이후) 곡물건조기 등 3개 기종 추가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확대 추진(현 39개 기종)
 - 신규 개발되거나 농작업 사용이 증가하는 농기계 포함 추진
 - * 2011년 조세감면 건의 : 농용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 사료배합기 등
- 면세유 사용 농어가 등 사후관리 강화
 - 품관원에 농가별 배정량 조정 권한 부여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농식품부(품관원), 시·도 및 농·수협 합동 교차점검 실시
 - 선박 입출항 확인 등 조업사실 확인 강화
- 에너지절약형 시설·장비의 개발·보급
 - 지하공기열 이용 히트펌프, 에너지 효율 등급제 개발
 - LED 집어등(集魚燈), 유류절감 장치 보급 등
- 농·어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추진
 - 2011년 조세제도 개편방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 추진
 - 조세감면건의서 기재부 제출(2011. 5월), 기재부·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6~8월) ㉞